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관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수가, 진료비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당초)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변경)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 및 문장 정비(안 제1조~제4조)

다. 규칙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지원(안 제7조제2항)

라. 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에 관한 사항 현행화(안 제6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

제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 수가를 더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한다. 단,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일반진단서	1건	500	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2. 건강진단서 (채용 및 기숙사입소용)	”	500	근로자 및 그 밖의 신청자(각종검사수가 및 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3.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4. 결핵검진 확인서 (외국인 체류연장 시)	”	50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근거
5.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	300	
6. 운전면허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 우 영
	담 당	이 병 문
	담 당 자	이 연 정 (480-4016)